크레인 작업시 수공구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

201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ㅇ 작성자 : 원두영

ㅇ 개정자 :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시스템연구실

o 제·개정 경과

- 2000년 6월 기계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
- 2000년 11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
- 2011년 12월 기계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
ㅇ 관련규격 및 자료

- KOSHA GUIDE M-79-2011 : 양중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
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/ 와이어로프 사용안전 길잡이 1998

○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·위험 방지 업무 등)

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1년 12월 29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크레인 작업시 수공구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

# 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·위험 방지 업무 등) 규정에 의하여 크레인의 수공구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이동식 크레인을 포함한 모든 크레인과 관련된 작업시 필요한 보조 공구인 표준안전수공구를 사용하는데 적용한다.

# 3. 용어의 정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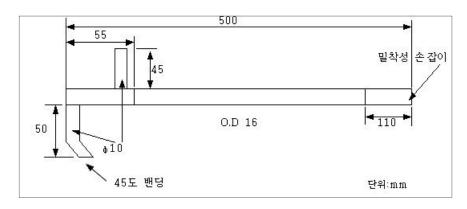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표준수공구"라 함은 모든형태의 크레인과 이에 준하는 권상 및 권하가 가능한 운반용 기계·기구를 사용하여 중량물 운반시 와이어로프 등의 걸이줄에 걸어 운반물을 조정할 수 있게 하며,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개인용 보조공구를 말한다.
  - (나) "컨테이너용 수공구"라 함은 컨테이너 작업시 추락, 협착, 비래 등의 재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를 위험점으로 부터 이격시키기 위하여 사 용하는 보조공구를 말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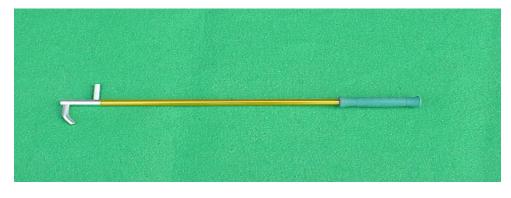
- (다) "원목용 수공구"라 함은 원목 및 각재를 취급하는 야적장, 부두, 원목하역장 등에서 작업자를 위험점으로 부터 이격 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공구를 말한다.
- (라) "다용도용 수공구"라 함은 조선소, 그밖의 양중장치를 사용하는 모든 장소에서 작업자를 위험점으로 부터 이격 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공구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 4. 표준안전수공구의 종류 및 제원

# 4.1 컨테이너용 수공구 사양

(1) <그림 1>의 형상을 참조하여 설계 · 제작한다.





<그림 1> 컨테이너용 수공구의 형상

(2) 설계·제작 사양은 다음에 따르며,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사양을 적용하는 것이 권장된다.

(가) 재 질 : 알루미늄합금(7001T6, 듀랄루민)

(나) 전 길 이 : 500mm, 훅부 : 상 50mm, 하 45mm

(다) 파단하중 : 332kgf(상,하부 훅부)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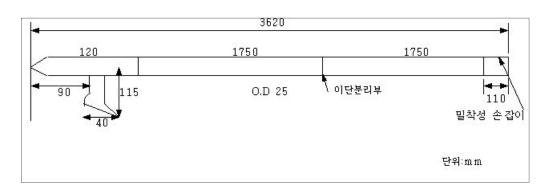
356kgf(헤드부),

720kgf(샤프트부)

(라) 중 량: 161gr.

# 4.2 원목용 수공구

(1) <그림 2>의 형상을 참조하여 설계 · 제작한다.





<그림 2> 원목용 수공구의 형상

(2) 설계·제작 사양은 다음에 따르며,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사양을 적용 하는 것이 권장된다.

(가) 재 질 : 알루미늄합금(7001T6, 듀랄루민)

(나) 전 길 이 : 3620mm, 2단 연결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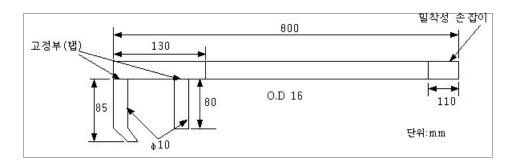
(다) 훅 부: 상 115mm, 창날 90mm

(라) 파단하중 : 356kgf(헤드부), 720kgf(샤프트부)

(마) 중 량: 944gr.

# 4.3 다용도용 수공구

(1) <그림 3>의 형상을 참조하여 설계 · 제작한다.





<그림 3> 다용도용 수공구의 형상

# M - 84 - 2011

- (2) 설계·제작 사양은 다음에 따르며,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사용을 적용하는 것이 권장된다
  - (가) 재 질 : 알루미늄합금(7001T6, 듀랄루민)
  - (나) 전 길 이 : 800mm, 훅부 : 상 85mm, 하 80mm
  - (다) 파단하중: 컨테이너용과 동일
  - (라) 중 량: 246gr.

# 5. 수공구 일반사항

5.1 설계, 제작

#### 5.1.1 일반사항

국가 또는 국제규격을 준용한 별도의 자체기준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자체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. 다만, 별도로 검증되지 않았거나 표준수공구와 편차 가 클 경우에는 표준수공구 모델을 적용한다.

# 5.1.2 사용재료

- (1) 용도와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수공구의 재질을 선택한다.
- (2) 철재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크기, 무게 등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작업내용 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, 사용전에 별도의 검증을 거친다.
- (3)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여 작업에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.

M - 84 - 2011

#### 5.1.3 설계 및 제작

- (1) 별도의 설계·제작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끌거나 미는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 작업하중의 3배 이상의 강도를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.
- (2)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수공구의 설계는 표준수공구의 기준을 참조하여 작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내규정을 적용한다.

# 5.2 등록 및 기록

- (1) 모든 수공구는 사용전 해당부서에 아래 사항을 등록한다.
  - (가) 수공구의 개별항목에 관련된 참고자료
  - (나) 부품의 사양서 및 설계도면
  - (다) 검증자료
  - (라) 이상유무 판단자료
- (2) 모든 수공구는 최대작업하중을 수공구의 보기 쉬운곳에 표기한다.
- (3) 표기가 불가능한 수공구는 별도의 최대작업하중표를 작업자가 작업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표기 한다.
- (4) 각 작업현장 또는 수공구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사용기록부를 작성·유지한 다.

### 5.3 점검 등

# 5.3.1 총칙

(1) 점검은 다음의 주기를 적용하며, 부적절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수공구는 주기를 단축하여 점검한다.

M - 84 - 2011

(가) 정기 점검 : 매 3월 간격

(나) 사용자 점검 : 작업전

(다) 관리자 점검 : 수공구 반출전 및 반입시

(2) 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표준측정장비를 사용한다.

(3) 모든 수공구의 점검시 이상유무에 대한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한다.

# 5.4 개조, 수리 및 폐기

(1) 수공구 개조가 필요할 시는 사용상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개조후 실제 작업에 시험 사용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검증 후 사용한다.

- (2) 수공구의 수리,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원래의 사양에 맞추어 수행하여야 하며, 교체부품은 원래의 것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, 수리내용을 기록, 유지한다.
- (3) 수공구가 노후되거나 손상되어 수리가 불가능 할 시는 분해, 절단하여 폐기 하여야 하며 기록서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.

# 6. 수공구의 사용과 안전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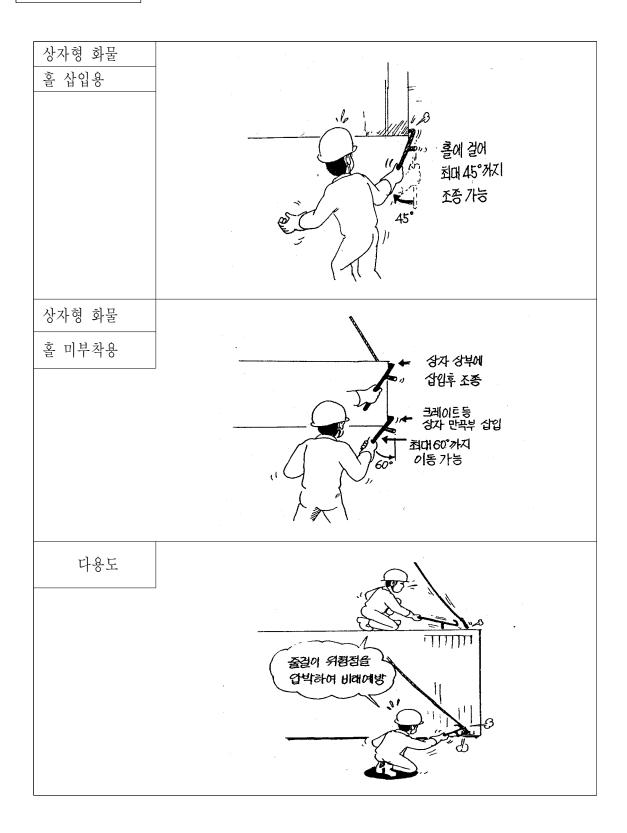
- (1) 작업자는 사용전 다음사항을 확인한다.
  - (가) 수공구의 이상유무
  - (나) 최대작업하중
  - (다) 작업에 따른 적정한 수공구 선정

M - 84 - 201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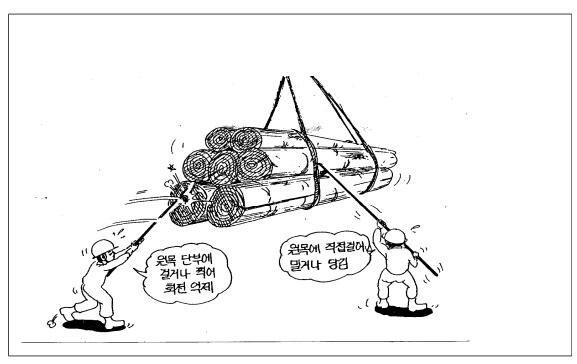
- (2) 수공구는 훈련된 작업자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, 작업지휘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.
- (3) 수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자는 신호수가 신호하는 모든 사항을 따라야 한다.
- (4) 작업시에는 추락, 그밖의 위험이 없는지를 사전 확인후 작업하여야 하며,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부득이 작업 할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한후 작업한다.
- (5) 수공구의 작업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작업해서는 안된다.
- (6) 수공구를 사용하기전 작업자는 화물의 크기 및 형상 등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하여 수공구의 최대작업하중 확인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 후 작업 한다.
- (7) 수공구를 사용시 파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책임자에게 보고한다.
- (8) 감전이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철재 등 전류가 흐르는 재료로 만들어 진 수공 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.
- (9) <별표>의 수공구 사용 안전수칙을 게시하여 작업자가 준수 하도록 한다.

# 7. 화물별 수공구 활용방법

수공구 활용방법은 표준안전수공구를 기준으로 하여 <그림 1> 내지 <그림 3>에 예시한 바와 같으며, 사업장별로 필요에 의해 제작 사용하는 수공구의 경우에는 활용방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.



<그림 1> 컨테이너 및 박스형 화물 작업



<그림 2> 원목 작업



<그림 3> 기타 작업

M - 84 - 2011

#### <별 표>

# 수공구 사용 안전수칙

- 1. 화물의 운반ㆍ이동시에는 화물특성에 맞는 적정 수공구를 사용한다.
- 2. 수공구는 사용전 점검을 하여 파손 등에 이상이 없을시 사용한다.
- 3.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허용범위 내 에서만 사용한다.
- 4. 화물취급외의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.(고정된 물체 이동작업금지)
- 5. 사용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.
- 6. 이동시 다른 물체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.
- 7. 감전재해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사용에 주의한다.
- 8. 올바른 작업자세를 유지한다.
- 9. 하중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장소를 사전 확보한다.
- 10. 가능하면 2인 1조로 각각의 수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한다.
- 11. 수공구의 이상이 발견된 때는 즉시 알려 교체 사용한다.
- 12. 작업복장을 단정히 한다.
- 13. 사용후 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. (기름칠 금지)